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심 의 안 건

1. 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2. 금산군 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금산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노인일자리전담기관(금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금산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7.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기숙사 건립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10.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12. 금산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13.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br>번호 | 제39호 |
|----------|------|

2026. 4. 21.(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일 : 2026. 4. 10.
- 나. 제 안 자 : 금산군수
- 다. 회 부 일 : 2026. 4. 10.
- 라. 상 정 일 : 2026. 4. 21.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 남준수 기획전략국장
  -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정책실명제 책임관 임무 규정(안 제3조)

-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규정(안 제4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명시(안 제5조)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안 제6조~제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금산군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기획업무 총괄부서의 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였고,
    - 5억 원 이상의 공사, 1억 원 이상의 용역 등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설정하여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음.
    - 또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의 ‘금산군 성과평가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다만, 안 제4조제2항에는 정책 수행자뿐만 아니라 설계자·시공회사 대표, 감리자 등 민간 영역까지 실명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이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으나, 민간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별첨 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부.

# 금산군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br>번호 | 제40호 |
|----------|------|

2026. 4. 21.(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일 : 2026. 4. 10.
- 나. 제 안 자 : 금산군수
- 다. 회 부 일 : 2026. 4. 10.
- 라. 상 정 일 : 2026. 4. 21.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 남준수 기획전략국장
  -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방출자출연법」과 부합하지 않는 현행 조례의 구조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군 대행이나 위탁 사업에 대한 근거 조문을 마련하여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운영에 대한 효율성·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재단의 사업 중 ‘군의 대행이나 위탁 사업’ 조문 추가(안 제9조)

- 정관의 제정·변경, 기본재산 처분 등 사항 정비(안 제10조)
  - (기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 ‘승인’
  - (개정) 군수 ‘협의’
-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2조)
  - (기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후 승인’
  - (개정)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
- 기타 용어 표기 정비(안 제1조, 안 제8조, 안 제11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재단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0조, 제12조에서는 기존의 ‘군수 승인’ 절차를 ‘군수와 협의’ 또는 ‘군수에게 보고’로 개정하였음. 이는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 및 제18조에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변경은 ‘협의’, 예산성립은 ‘보고’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재단의 경영 자율성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 제9조에는 ‘군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재단이 단순 장학금 지급을 넘어 지역 교육 발전의 실행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판단됨. 이는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에 부합하는 개정으로 향후 위탁 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 마지막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단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승인’에서 ‘협의·보고’로 행정 절차가 완화되는 만큼, 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기존 조례 제7조의 감사 기능 및 제13조 지도 감독 권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 별첨 금산군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br>번호 | 제41호 |
|----------|------|

2026. 4. 21.(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 안 일 : 2026. 4. 10.

나. 제 안 자 : 금산군수

다. 회 부 일 : 2026. 4. 10.

라. 상 정 일 : 2026. 4. 21.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 남준수 기획전략국장
-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조례상 금산군 문화의 집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여 금산군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금산선유원(구 금산문화의집) 준공(2025. 7.)

### 나. 주요내용

- 금산군 문화의 집 명칭 및 위치 현행화(안 제2조)
- 용어의 정비(안 제3조)
- 금산군 문화의 집 무료개방 원칙임을 명시(안 제6조)

- 개방제한 사유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제9조)
- 사용료 납부 및 반환, 감면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10조~제11조)
- 휴관일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9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 개정안은 2025년 7월 준공된 금산선유원의 명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는 일반적인 ‘문화의 집’ 대신 ‘금산선유원’ 이라는 고유 명칭을 사용하여 지역 거점 브랜드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주민들에게 기존 문화의 집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임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6조·제10조·제11조는 ‘2일 이상 연속 사용 시 사용료 납부’ 조항을 삭제하고 전면 무료 개방을 원칙으로 하여 주민의 문화 향유 확대에 긍정적이나, 노쇼 및 특정 단체의 독점 사용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9조는 정치·종교 활동이나 영리 목적 사용 시 취소·제한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시설의 중립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됨.
    - 안 제19조는 휴관일 규정을 관공서 공휴일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군수의 별도 지정 시 사전 공고를 의무화하여 주민 불편을 줄였다고 판단됨.
- 다만, 본 개정안에서의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조항 자체를 삭제’ 하여 시설 노후화 시 유지보수 비용 전액을 군비로 충당해야 하

는 부담이 있으며, 시설 사용 10일 전 신청, 5일 전 변경으로 매우 구체적인 마감 시한을 정하고 있어, 긴급하게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별첨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금산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br>번호 | 제42호 |
|----------|------|

2026. 4. 21.(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 안 일 : 2026. 4. 10.

나. 제 안 자 : 금산군수

다. 회 부 일 : 2026. 4. 10.

라. 상 정 일 : 2026. 4. 21.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 남준수 기획전략국장
-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지역연고축구단(금산인삼FC)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금산군민축구단(금산인삼FC)”의 정의 명시  
(안 제1조 및 제2조)
- 축구단 운영 안정화를 위한 금산군수의 책무 및 예산지원 근거 명시

(안 제3조 및 제4조)

○ 안정적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선수단 숙소 및 운영비 지원

(안 제5조)

○ 경기 및 훈련 등을 위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우선 사용권 부여

(안 제6조 및 제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 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지역 연고 축구단인 ‘금산인삼FC’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 군수가 ‘금산군민축구단을 대표하고, 안정적 운영을 노력하도록 규정’ 하였으나, 조례상 금산군민축구단은 주식회사로 정의되어 있음. 주식회사의 대표는 상법상 별도로 선임되므로, 군수가 영리 법인의 대표를 겸하는 것이 법률적 책임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운영비·숙소·사용료 감면·시설 우선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에 대한 집행 보고·검사·환수 규정이 없어 군비 투입에 대한 투명성·책임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비용추계서에서 연간 2억원, 5년간 10억원을 군비로 추산 하였으나, 선수단 규모에 비해서 감독·코치·선수 8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연간 2억원은 다소 과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며, 경기

운영비·마케팅·시설 유지비·물가상승률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5년간 동일 금액으로 추산한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별첨 금산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노인일자리전담기관(금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br>번호 | 제43호 |
|----------|------|

2026. 4. 21.(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 안 일 : 2026. 4. 10.

나. 제 안 자 : 금산군수

다. 회 부 일 : 2026. 4. 10.

라. 상 정 일 : 2026. 4. 21.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 박경용 행정복지국장
-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현 수탁기관의 풍부한 사업 수행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위탁 기간 중 보여준 안정적인 관리능력과 사회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재계약을 추진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금산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

○ 위탁근거 및 필요성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2조, 제5조 및 제8조, 제19조

[필요성]

- 현 수탁기관의 풍부한 사업 수행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위탁 기간 중 보여준 안정적인 관리능력과 사회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재계약을 추진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자 함.

○ 위탁 사무내용: 금산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

○ 위탁시설 개요

- 시설현황

| 시설명                  | 소재지              | 조직현황  |
|----------------------|------------------|---|
| 금산시니어클럽<br>(시설장 박미옥) | 금산읍 금산로 1516, 2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장(기관장) : 1명</li> <li>· 종사자 : 상근 5명</li> <li>· 전담인력 : 기간제 7명</li> </ul> |

○ 재계약기간: 2026. 9. 15. ~ 2031. 9. 14.(5년간)

####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예산지원(※참여자 수 및 연도별 국도비 지원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총소요예산: (연간 ※2026년) 3,918백만원
- 산출근거
  - ① 운영비 : 411백만원(도 30%, 군 70%)
  - ② 사업비 : 3,507백만원(국 50%, 도 15%, 군 35%)
    - 참여자 747명(공익활동 470명, 역량활용 170명, 공동체사업단 100명, 전담인력 7명)
      - (공익활동) 470명 × 3,370,000원 = 1,584백만원
      - (역량활용) 170명 × 8,464,000원 = 1,439백만원
      - (공동체사업단) 100명 × 2,670,000원 = 267백만원

## 5.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일자리법」에 근거하여, 기존 수탁기관인 (사)금산복지센터와의 계약을 갱신, 사업의 전문성과 영속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역 내 어르신들의 생계 및 사회참여와 직결된 사업 특성상, 운영 주체의 잦은 교체보다는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19조제2항에 명시된 ‘성과 평가 결과 반영’ 의무와 관련하여, 제출된 본 동의안에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위탁운영 성과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 수치가 누락 되어 있어, 집행부의 “타당하다”는 포괄적 결론에만 의존할 경우, 의회의 실질적인 심의 권한이 제약되어 자칫 동의절차가 요식 행위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재계약은 재위탁과는 달리 경쟁이 배제되는 만큼 평가의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함. 따라서 성과지표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선행해야 하며, 만약 운영 성과가 기대치에 미달할 경우, 공개모집 전환을 통해 사업의 질적 수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9.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 별첨 노인일자리전담기관(금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부.

# 금산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br>번호 | 제44호 |
|----------|------|

2026. 4. 21.(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 안 일 : 2026. 4. 10.

나. 제 안 자 : 금산군수

다. 회 부 일 : 2026. 4. 10.

라. 상 정 일 : 2026. 4. 21.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 박경용 행정복지국장
-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장애인 개인에 대한 돌봄이 가족에게 집중되어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사회활동 제한 및 돌봄 소진 문제 등으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가족의 돌봄 소진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장애인 가족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부양하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고,
  - 인식개선, 돌봄 및 휴식 지원, 사례 관리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였음.
  -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또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자문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다만, 비용추계 결과 5년간 약 5억 9,226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도비 보조 외에 군비 부담 비율이 70~8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재정 부담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사업 성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별첨 금산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1부.

#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br>번호 | 제45호 |
|----------|------|

2026. 4. 21.(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 안 일 : 2026. 4. 10.

나. 제 안 자 : 금산군수

다. 회 부 일 : 2026. 4. 10.

라. 상 정 일 : 2026. 4. 21.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 박경용 행정복지국장
-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특별재난 지역 선포 시,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한 세 부담 경감 조치를 이행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 개정사항 반영(안 제7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개정

※ 재산세 경감률 : 100분의 50 → 최초 5년간은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4항 위임 사항 신설(안 제8조의2)
  -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반영
- ※ 지방세 감면 : 재산세 및 자동차세 100% 감면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세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7조에서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기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최초 5년간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 100분의 25’로 개정하였음.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감면 혜택 기간을 세분화하여 연장함으로써 지역 내 기업 유치 및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또한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조문을 신설하여,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해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100%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4항의 위임 사항에 부합하는 개정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별도의 의회 의결 절차 없이도 신속한 세 부담 경감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수적인 자구 수정과 함께 재난 피해 군민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담고 있어 그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비용추계 결과 연평균 약 1억 5,000만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감면 대상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와 더불어, 부족해진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세원 발굴 등 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 별첨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br>번호 | 제46호 |
|----------|------|

2026. 4. 21.(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일 : 2026. 4. 10.
- 나. 제 안 자 : 금산군수
- 다. 회 부 일 : 2026. 4. 10.
- 라. 상 정 일 : 2026. 4. 21.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 박경용 행정복지국장
  -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상향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 가능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선정대리인 신청 기준 금액 상향 조정(안 제9조제1항)
  - 신청기준금액\* : (현행) 1천만원 → (개정) 2천만원
  - \* 신청기준금액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 금액
- 상위법령 인용조항 수정 및 기타 용어 정비(안 제9조제3항 및 제5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 가능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인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선정대리인 신청 기준 금액을 기존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음. 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5항에서 규정한 금액 기준과 일치시키려는 조치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불복 청구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돕고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 제9조제3항 및 제5항에서는 상위법령 인용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였음. 이는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오류를 바로잡고 행정적 정확성을 기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현실화하고 영세 납세자의 구제 기회를 넓히려는 목적으로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다만, 신청 기준 상향으로 인해 선정대리인 신청 건수 및 연평균 약 1백만원 정도의 관련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안 제10조제4항에 따른 실비변상적 수당 지급 등 지원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별첨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br>번호 | 제38호 |
|----------|------|

2026. 4. 21.(화)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일 : 2026. 4. 10.
- 나. 제 안 자 : 금산군수
- 다. 회 부 일 : 2026. 4. 10.
- 라. 상 정 일 : 2026. 4. 21.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 박경용 행정복지국장
  - 검토보고 : 윤주현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수립하고 금산군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 나. 주요내용
  - 취득재산
    - 토지 : 금산군 금성면 파초리 188-1 외 62필지 / 2,019㎡
    - 건물 : 금산군 금성면 파초리 188-1 일원 5동 58,536㎡ 및 부리면 창평리 856번지 1동 1,080㎡

○ 처분재산

- 건물 : 금산군 부리면 창평리 856번지 1동 / 167.64㎡

다. 변경내역

[ 단위 : ㎡, 백만원 ]

| 구 분 |    |    | 당 초 |       |       | 변 경 |         |        | 증 감 |         |        | 비고 |
|-----|----|----|-----|-------|-------|-----|---------|--------|-----|---------|--------|----|
|     |    |    | 건수  | 면적    | 금액    | 건수  | 면적      | 금액     | 건수  | 면적      | 금액     |    |
| 취득  | 계  | 토지 | 3   | 2,019 | 2,000 | 66  | 108,261 | 7,624  | 63  | 106,242 | 5,624  |    |
|     |    | 건물 | 1   | 940   | 8,948 | 7   | 60,556  | 51,779 | 6   | 59,616  | 42,831 |    |
|     | 매입 | 토지 | 3   | 2,019 | 2,000 | 66  | 108,261 | 7,624  | 63  | 106,242 | 5,624  |    |
|     |    | 건물 | 1   | 940   | 8,948 | 7   | 60,556  | 51,779 | 6   | 59,616  | 42,831 |    |
| 처분  | 계  | 토지 |     |       |       |     |         |        |     |         |        |    |
|     |    | 건물 | 4   | 568   | 152   | 5   | 735.9   | 221    | 1   | 167.9   | 69     |    |
|     | 멸실 | 토지 |     |       |       |     |         |        |     |         |        |    |
|     |    | 건물 | 4   | 568   | 152   | 5   | 735.9   | 221    | 1   | 167.9   | 69     |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①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기숙사 건립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농공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20실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외지 인력 유입 촉진과 입주기업의 고용 안정 도모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될 것 임.
- 준공 후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임대료를 인근 시세의 70퍼센트 수준으로 책정한 것은 근로자 복지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실률 최소화를 위해 실질적인 입주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 연간 운영수지가 수입 6,480만원, 지출 7,540만원으로 추산되어 약 1,060만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 효율화 및 수익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②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미래농업 전환과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청년농의 초기 투자 부담을 군이 부담하여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조성·운영하려는 취지는 타당할 것 임.
- 다만, 총사업비 445억원 중 군비 부담액이 270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연차별 투자계획이 군 재정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사업 준공 후 스마트팜 운영과 관련하여 임대수익이 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수지 분석과
- 대규모 온실 조성에 따른 주변 농경지의 일조권 침해, 배수 문제 등 민원 발생 가능성과 대응방안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 임.
- 따라서 본 사업은 그 필요성과 취지는 인정되나, 재정 부담, 운영의 지속가능성 및 민원 대응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 별첨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부.

#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br>번호 | 제47호 |
|----------|------|

2026. 4. 21.(화)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일 : 2026. 4. 10.
- 나. 제 안 자 : 금산군수
- 다. 회 부 일 : 2026. 4. 10.
- 라. 상 정 일 : 2026. 4. 21.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 김창식 산업환경국장
  - 검토보고 : 윤주현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공공요금(상·하수도) 지원을 위해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4호)
    - (신설)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감면
  - 조례 내 오류사항 정비(안 제4조, 제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책무를 이행하는 조치로 볼 수 있으며, 감면 수준도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범위로 판단됨.
- 비용추계 결과 연간 약 216만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금산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임.
- 따라서 본 개정안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 별첨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br>번호 | 제36호 |
|----------|------|

2026. 4. 21.(화)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일 : 2026. 4. 8.
- 나. 제 안 자 : 정옥균의원 등 3인
- 다. 회 부 일 : 2026. 4. 8.
- 라. 상 정 일 : 2026. 4. 21.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 정옥균의원
  - 검토보고 : 윤주현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93호) 된 LPG연료 소매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지원 범위 및 대상, 절차(안 제5조~제7조)
- 점검 및 자료제출 등(안 제8조)
- 사업비의 반환 등(안 제9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영세 판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적기 안전검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 또한 유사 입법례가 다수 존재하고 시행 준비기간도 확보되어 있어,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제도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3명, 찬성 3명, 반대 0명)

###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별첨 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1부.

# 금산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br>번호 | 제37호 |
|----------|------|

2026. 4. 21.(화)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일 : 2026. 4. 8.
- 나. 제 안 자 : 최명수의원 등 3인
- 다. 회 부 일 : 2026. 4. 8.
- 라. 상 정 일 : 2026. 4. 21.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 최명수의원
  - 검토보고 : 윤주현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금산군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 1조, 제2조)
  - 지원사업 및 대상자(안 제5조, 제6조)
  - 신청 및 선정(안 제7조)
  - 협력체계 및 지도·감독(안 제8조, 제9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 증대 측면에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될 것 임.
- 또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별첨 금산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br>번호 | 제48호 |
|----------|------|

2026. 4. 21.(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 안 일 : 2026. 4. 10.

나. 제 안 자 : 금산군수

다. 회 부 일 : 2026. 4. 10.

라. 상 정 일 : 2026. 4. 21.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 채기주 보건소장
-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신규주택 건립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마을 관리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입주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정비(별표 1)

-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임대차계약서 정비(별지 제1호서식)
- 띄어쓰기 등 조문 재정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 개정안은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신규주택 건립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마을 관리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2조에서는 입주대상을 아토피 또는 천식 진단을 받은 자녀를 둔 가족으로 구체화하고, 자녀가 금산군 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로 지정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전학 예정인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일치 및 유지 의무를 신설함. 이는 공유재산의 목적 내 사용을 담보하기 위한 개정으로 판단상 타당성은 인정되나, 신설된 제3조제7호 정의에는 ‘어린이집·고등학교’가 포함됨에도 입주자격 조항에서는 ‘어린이집·고등학교’가 제외되어 있어 조문 간 정합성 결여 및 평등원칙 저촉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7조에서는 기존의 ‘의회 동의를 얻은 위탁약정 체결’ 절차와 ‘5년 이내 위탁기간·1회 연장’ 조항을 삭제하고, 수탁자격을 ‘주택관리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등으로 확대함. 그러나,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사무는 「금산군 사무의 위탁조례」 제5조제5호의 “보건·건강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어, 위탁에 따른 의회의 동의, 위탁 기간 등 계획 수립, 수탁기관 선

정위원회 설치 등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후단 안 제22조 다른 조례의 적용에 명시하였으나, 의회의 동의 부분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 위탁기간 5년 제한 조항은 확인적으로 존치하는 것이 조례의 완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18조에서는 제2항의 수탁자의 “결산수입금액의 20% 수리·수선비 적립 의무”를 삭제하고, 제4항에 재산의 타인 양도·전대 금지 및 군수 승인 시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음. 이는 「공유재산법」 제27조제5항에 부합하는 개정이나, 시설 노후화 대비 재원 확보 수단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어 대체 재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 별첨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